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2.

발 의 자 : 김대식 · 김선교 · 김태규
고동진 · 김미애 · 곽규택
윤한홍 · 박충권 · 조지연
윤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.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, 제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그러나 전쟁·재난 및 공급망 위기 발생 사실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져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화될 수 있음에도, 현행법상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전쟁, 재난,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

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40조, 제43조 및 제124조 등).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② 사업자는 전쟁, 재난,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51조제2항 전단 중 “제40조제2항 및 제3항”을 “제40조제3항 및 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11조제1항 본문 중 “제40조제1항”을 “제40조제1항·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

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- ①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.

- ② 제1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벌칙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0조(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(생략)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 · 방법 · 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④ ~ ⑥ (생략)	제40조(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사업자는 전쟁, 재난, 공급 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④ 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. 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
제43조(과징금)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3조(과징금) ① (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)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을 위 반한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 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51조(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)	제51조(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인가에 관하여는 <u>제40조제2항 및 제3항</u> 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사업자”는 “사업자단체”로 본다.	② ----- ----- <u>제40조제3항 및 제4항</u> -----.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11조(자료의 제출) ① 법원은 <u>제40조제1항</u> , 제45조제1항(제9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(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)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11조(자료의 제출) ① ----- <u>제40조제1항 · 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 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4조(벌칙) <신설>	제124조(벌칙) ① <u>제40조제2항</u> 을 위반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을

① (생략)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	<u>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</u> <u>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</u> <u>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 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 ③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.
---	---